

의안번호	제호	의결사항
의결 연월일	2024. . . (제회)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제출자	국무위원 김문수 (고용노동부장관)
제출연월일	2024. . .

법제처 심사 전

1. 의결주문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2. 제안이유

근로자의 육아휴직 사용 활성화 및 제도의 미비점을 보완하고자 출산전후휴가(배우자 출산휴가) 및 육아휴직을 통합신청토록 하고, 법에서 정한 의무대로 사업주가 근로자의 육아휴직 신청에 대한 허용 의사를 서면으로 통지하도록 정하고자 함

휴가, 휴직 및 휴업 등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종료 사유를 명확히 하고자함

3. 주요내용

가. 「근로기준법」상 출산전후휴가 또는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상 배우자 출산휴가 신청 근로자가 자녀 생후 18개월 이내에 육아휴직을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 출산전후휴가 또는 배우자 출산휴가 신청시 육아휴직을 함께 신청할 수 있는 규정 추가 (안 제11조 및 제12조)

나.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중 장기간의 휴가 및 휴직, 휴업 등이 발생하여 사실상 근로시간 단축이 이루어지지 않음에도 근로자가 단축을

종료할 법적근거가 없어 단축근로의 종료사유에 30일 이상의 휴가
및 휴직, 휴업사유를 명확화(안 제15조의3제4항)

4. 주요토의과제

없 음

5.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 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0000부 등과 합의되었음

라. 기 타 : 1) 신·구조문대비표, 별첨

2) 입법예고(9999. 12. 31. ~ 12. 31.) 결과, 특기할 사항
없음

3) 행정규제 : 규제개혁위원회와 협의 결과, 이견 없음
- 규제 신설·폐지 등, 없음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을 다음과 같이 한다.

법 제19조제1항 본문에 따라 자녀 출생 후 18개월 이내에 육아휴직을 신청하려는 근로자는 「근로기준법」 제74조제1항에 따른 출산전후휴가 또는 법 제18조의2제1항에 따른 배우자 출산휴가와 육아휴직을 함께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근로자는 휴직개시예정일의 30일 전까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신청서에 적어 사업주에게 제출해야 한다.

제11조제1항에 제6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2항, 제3항 및 제4항을 각각 제3항, 제5항 및 제6항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2항 및 제4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3항(종전의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5항(종전의 제3항) 중 “제1항”을 각각 “제1항 또는 제2항”으로 하며, 같은 조 제5항(종전의 제3항) 중 “제2항”을 “제3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6항(종전의 제4항) 중 “제1항 또는 제2항”을 “제1항부터 제3항”으로 한다.

6. 출산전후휴가 또는 배우자 출산휴가 개시예정일 및 종료예정일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육아휴직을 별도로 신청하려는 근로자는 휴직 개시예정일의 30일 전까지 신청서에 제11조제1항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사항을 적어 사업주에게 제출해야 한다.

④ 사업주는 근로자가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육아휴직을 신청한 경우에는 14일 이내에, 제3항에 따라 육아휴직을 신청한 경우에는 3일 이내에 육아휴직 허용 사실을 서면(전자적 방식을 포함한다)으로 알려야 하며, 이 기간 내에 통지를 하지 않은 경우에는 근로자가 신청한 대로 육아휴직을 허용한 것으로 본다.

제12조제1항 중 “제11조제2항”을 “제11조제3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후단 중 “제11조제2항제1호”를 “제11조제3항제1호”로 한다.

제15조의3제4항 중 “새로운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시작하거나 육아휴직 또는 「근로기준법」 제74조에 따른 출산전후휴가를 시작하는 경우에는 그 새로운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육아휴직 또는 출산전후휴가”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로 하고, 같은 항에 각 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새로운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시작하는 경우
2. 육아휴직 또는 「근로기준법」 제74조에 따른 출산전후휴가를 시작하는 경우
3. 그 밖에 연속하여 30일 이상의 휴가·휴직 및 휴업을 시작하는 경우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의 종료에 대한 적용례) 제15조의3제4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당시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사용 중인 근로자에게도 적용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1조(육아휴직의 신청 등) ① <u>법 제19조제1항 본문에 따라 육 아휴직을 신청하려는 근로자는 휴직개시예정일의 30일 전까지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어 사업주에게 제출해야 한 다.</u> 1. ~ 5. (생 략) ② ~ ④ (생 략) <u><신 설></u> <u><신 설></u>	제11조(육아휴직의 신청 등) ① <u>법 제19조제1항 본문에 따라 자 녀 출생 후 18개월 이내에 육아 휴직을 신청하려는 근로자는 「근로기준법」 제74조제1항에 따른 출산전후휴가 또는 법 제1 8조의2제1항에 따른 배우자 출 산휴가와 육아휴직을 함께 신청 할 수 있다. 이 경우 근로자는 휴직개시예정일의 30일 전까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신청서에 적어 사업주에게 제출해야 한 다.</u> 1. ~ 5. (현행과 같음) ② ~ ④ (현행과 같음) 6. <u>출산전후휴가 또는 배우자 출산휴가 개시예정일 및 종료 예정일</u>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육아휴 직을 별도로 신청하려는 근로자 는 <u>휴직개시예정일의 30일 전까 지 신청서에 제11조제1항제1호부 터 제5호까지의 사항을 적어 사 업주에게 제출해야 한다.</u>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휴직개시예정일 7일 전까지 육아휴직을 신청할 수 있다.

1. ~ 3. (생략)

<신설>

③ 사업주는 근로자가 제1항에 따른 기한이 지난 뒤에 육아휴직을 신청한 경우에는 그 신청일부터 30일 이내에, 제2항에 따른 기한이 지난 뒤에 육아휴직을 신청한 경우에는 그 신청일부터 7일 이내에 육아휴직 개시일을 지정하여 육아휴직을 허용하여야 한다.

③ 제1항 또는 제2항-----

-----.

1. ~ 3. (현행과 같음)

④ 사업주는 근로자가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육아휴직을 신청한 경우에는 14일 이내에, 제3항에 따라 육아휴직을 신청한 경우에는 3일 이내에 육아휴직 허용 사실을 서면(전자적 방식을 포함한다)으로 알려야 하며, 이 기간 내에 통지를 하지 않은 경우에는 근로자가 신청한 대로 육아휴직을 허용한 것으로 본다.

⑤ ----- 제1항
또는 제2항-----

----- 제3항--

-----.

④ 사업주는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육아휴직을 신청한 근로자에게 임신 중인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나 해당 자녀의 출생 등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제12조(육아휴직의 변경신청 등)

① 육아휴직을 신청한 근로자는 휴직 개시예정일 전에 제11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사업주에게 그 사유를 명시하여 휴직개시예정일을 당초의 예정일 전으로 변경하여 줄 것을 신청할 수 있다.

② 근로자는 휴직종료예정일을 연기하려는 경우에는 한 번만 연기할 수 있다. 이 경우 당초의 휴직종료예정일 30일 전(제11조제2항제1호 또는 제3호의 사유로 휴직종료예정일을 연기하려는 경우에는 당초의 예정일 7일 전)까지 사업주에게 휴직종료예정일의 연기를 신청해야 한다.

제15조의3(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의 종료) ① ~ ③ (생략)

⑥ ----- 제1항부터 제3항-----

-----.

제12조(육아휴직의 변경신청 등)

① -----
----- 제11조제3항 -----

-----.

② -----

-----.
----- 제11조제3항제1호 -----

-----.

제15조의3(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의 종료) ① ~ ③ (현행과 같음)

④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중인 근로자가 새로운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시작하거나 육아휴직 또는 「근로기준법」 제74조에 따른 출산전후휴가를 시작하는 경우에는 그 새로운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육아휴직 또는 출산전후휴가 개시일의 전날에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이 끝난 것으로 본다.

<신 설>

<신 설>

<신 설>

④ -----
----- 다음 각 호의 어
는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

-----.

1. 새로운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시작하는 경우
2. 육아휴직 또는 「근로기준법」 제74조에 따른 출산전후 휴가를 시작하는 경우
3. 그 밖에 연속하여 30일 이상의 휴가·휴직 및 휴업을 시작하는 경우

< 의안 소관 부서명 >

고용노동부 여성고용정책과	
연 락 처	(044) 202 - 7476